

보험 시장 개방과 보험 산업의 구조 전환

김찬진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수입 보험료 기준 세계 6위로 성장한 국내 보험 시장은 아직 선진 보험 시장에 비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그동안 가격 자유화와 시장 개방화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브로커제 도입, 경제적수요심사제도의 폐지, 크로스 보더 확대, 재보험 자유화, 손해 사정업과 보험 계리업의 개방 등으로 국내 보험 산업은 효율성 제고와 대외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외국사에 의한 시장 잠식, 기존모집체계의 혼란, 국내 보험 물건의 해외 유출 등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한, 금융 시장의 개방화·자유화·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 산업도 專業主義에서 兼業主義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 산업은 타 금융 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산업의 구조도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소형사는 합병이나 증자를 통한 영업 규모의 확장 또는 틈새 시장을 겨냥한 전문화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대형사는 종합금융화시대에 대비한 대형화 전략을 펼 것이다. 즉,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보험 산업은 다양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차별화된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욱 기능별·규모별로 세분화될 것이다.

보험 산업은 수입 보험료 기준 세계 6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 시장은 질적 수준에 있어 선진 보험 시장보다 낙후되어 있었다.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 중요한 요인으로는 가격 자유화의 미흡이었다. 거의 대동소이한 보험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통한 보험 산업의 효율성을

머리말

국내 경제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보험 상품의 협정 가격은 1993년을 기점으로 보험 시장의 개방화와 가격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점

차적으로 소멸되면서 현재 자유화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다른 금융 산업들보다 보험 시장의 개방화가 과거 몇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된 덕분에, OECD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년부터 시행되는 브로커(broker)제 도입, 경제적수요심사제도(Economic Needs Test)의 폐지,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 보험 산업의 영향은 그 어느 해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금융 산업 개편 등 전체 금융 산업의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타 보험사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타 금융 기관과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험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국내 보험 산업의 구조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는 보험 시장 개방 계획의 사안별 특징 및 금융 산업의 개편에 따른 보험

시장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 산업의 구조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보험 시장의 개방화 및 가격 자유화 현황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은 1987년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 이후 1992년까지 점진적으로 개방되어오다, 1993년 이후 외국 보험사의 생·손보험회 정회원 가입 허용과 보험 상품 가격의 자유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개방화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현재 합작사 7 개(생보), 현지 법인 3 개(생보), 외국사 지점 5 개(생보 2 개, 손보 3 개) 등 15 개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에서 영업 중이며, 이들은 1995 회계 연도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생보 6.06%, 손보 0.3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1〉은 금년부터 시행될 보험 시장의 개

〈표 1〉 보험 시장 개방화 일정

보험제도		시행 시기	비고
Cross-border 확대	수출적하보험	1993. 1	생보는 1997년부터 준종목 허용
	수입적하 및 항공보험	1995. 4	
	선박, 장기상해, 해외여행자	1997. 1	
경제적수요심사(ENT)제도 폐지		1997. 1	생·손보 공동
재보험 자유화 및 해외요율구득제 폐지 (화재 및 특종보험)		1997. 4	항공보험(1993. 4) 및 선박보험(1996. 4)은 이미 자유화되었음
독립대리점제도 개방(손보)		1996. 4	복수 대리점은 1993년 4월에 허용되었음
독립대리점제도 개방(생보)		1997. 4	
브로커제도 개방(손보)		1997. 4	외국인에게는 1998년 4월부터 생·손보 브로커 진출 허용
브로커제도 개방(생보)		1998. 4	
손해 사정 및 보험 계리 회사 설립		1998. 4	외국인에게 개방

방향 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2>와 <표 3>은 이에 대비하여 국내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인 보험 가격의 자유화 일정을 나타내고 있다.

생명보험 상품 역시 손해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었고, 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 배당도 일치시킴으로써 시장 경쟁이 사실상 힘들었다. 그러나 1993년 12월 가격 경쟁을 통한 생보사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생보 가입자의 이익 증대 및 생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보험료 및 계약자 배당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1997년까지 예정 위험률과 死差 배당 및 利差 배당을 우선 자유화하고, 그 이후에 費差 배당, 예정 사업 비율 및 예정 이율을 자유화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계약자 배당은 대부분 死差 및 利差 배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4월 이후에는 계약자 배당이 실질적으로 자유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보 상품의 가격 자유화는 1998년 이후 보험 요율이 범위 요율에서 자유 요율로 바뀌면서 마무리

리 되어진다.

보험요율 및 계약자 배당이 완전 자유화되는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가격 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현재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신설 생보사의 경영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정 위험률과 예정 사업비의 차별화로 인한 보험 가격의 인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사들은 자산 운용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예정 이율의 측면을 조정하여 가격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손보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우량 물건을 인수하고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기술을 높여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사들은 가격 자유화에 대비하여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손해보험 상품 또한 199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종목별로 단계적인 가격 자유화가 진행 중에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가격 자유화는 현재 3단계에 진입하여 대부분의 종목들이 범위 요율 또는 자유 요율에 적용되고 있으며,

<표 2> 생명보험 상품의 가격 자유화 추진 일정

		현행	1997. 4	1998년 이후
보험요율	예정 사망률	고정	자유	
	예정 이율	고정		자유
	예정 사업 비율	범위		자유
계약자 배당	死差 배당	자유(1995. 4)		
	利差 배당	범위	자유	자유
	費差 배당			

〈표 3〉 손해보험 상품의 가격 자유화 추진 일정

구분		범위 요율	자유 요율	자유화 단계	
일반	화재	주택 일반	1995. 4 ~ 97. 3	1997. 4 이후	2단계
	선박	500 톤 미만	1994. 4 ~ 96. 3	1996. 4 이후	1단계
		500 톤 이상	-	-	현행 자유 요율
	적하		1995. 4 ~ 97. 3	1997. 4 이후	2단계
	기업성 특종		1994. 4 ~ 96. 3	1996. 4 이후	1단계
	가계성 특종		1995. 4 ~ 97. 3	1997. 4 이후	2단계
보증		1995. 4 ~ 97. 3	1997. 4 이후	2단계	
장기	예정 사업 비율		1994. 4 ~ 96. 7	1996. 8 이후	1단계
	예정 위험률 및 예정 이자율		1996. 4 ~ 98. 3	1998. 4 이후	2단계
자동차	할인 · 할인률(사고 · 무사고)		1994. 4 ~ 96. 7	1996. 8 이후	1단계
	가입자 특성 요율 (경력, 개인/업무/영업)		1995. 4 ~ 97. 3	1997. 4 이후	2단계
	기본 보험료		1996. 4 ~ 98. 3	1998. 4 이후	3단계

1998년 4월부터는 손보험 종목의 가격이 자유화된다. 이렇듯 보험 상품의 가격 자유화는 브로커제 도입, 경제적수요심사제도의 폐지, 크로스 보더의 허용, 재보험 완전 자유화 등과 맞물리면서, 국내 보험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내외 가격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치열해져 보험 산업은 본격적인 자유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주요 개방화¹⁾ 사안별 특징과 영향

1) 브로커제도

국내 보험 시장의 판매 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칠 브로커(broker)제는 1997년 4월부터 손보업에 먼저 적용되고, 1998년 4월부터 생보업에 적용된다. 브로커란 기존의 대리점이 보험 회사가 마련한 보험 상품(ready-made policy)을 계약자들에게 단순 판매하던 것과 달리, 보험 상품의 내용을 계약자의 요구에 맞게 증권의 내용, 담보 범위, 요율 등을 수정하거나 보험사 기존의 보험 증권대신 독자적인 기법으로 보험 증권을 작성(tailor-made policy)하여, 이를 인수할 보험자를 직접 찾아 협상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기타 브로커의 주요 기능 및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판매 조직과의 차이점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1) 지난 1995년 11월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준비와 관련하여 보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었는데, 이곳에서 정부는 보험 분야의 추가적인 자유화 방안(ENT 폐지, Cross-border 확대, 재보험출재시제한제도의 폐지 시기 1년 단축, 손해 사정업 및 보험 계리업의 개방)으로 동심의회를 통과하였음.

〈표 4〉 주요 모집제도의 비교

구분	전속 대리점	독립 대리점	브로커
기능	1 개 보험사 전속으로 보험 체결을 대리	다수의 보험사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 체결	불특정 다수의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
보험사와의 보험 계약 조건 협상권	없음	있음	있음
보험사와의 관계	종속적	독립적	독립적
수수료	낮음	높음	탄력적
업무	·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 위험 관리 조사 상담	左同	左同
	· 보험 증권의 교부 · 보험사 위임 업무	· 보험 증권의 발행 · 손해 사정인 선정권 · 손해 사고 사정권 · 보험사 위임 업무	· 보험 증권의 발행 · 손해 사정인 선정권 · 보험사 위임 업무
영업 종목 특징	가계성	가계성 및 기업성	기업성

브로커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날 가장 큰 영향은 우선 기존의 시장에서 누려왔던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이 감소되고 대신 브로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 명의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해서 보험을 구입하던 것과는 달리, 여러 명의 보험 가입자를 갖게 될 브로커는 보험자와의 협상에서 주도권(initiative)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브로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브로커를 통한 국내 보험 시장의 개발로 시장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모집인·대리점 및 브로커 상호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험 계약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

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보험자는 자산 위험 관리 및 기타 효율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 국내 보험 산업 및 보험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반면, 브로커제도의 도입으로 영세한 국내 모집 조직의 활동 영역이 약화되면서 판매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게 된다. 그밖에 브로커가 가장 높은 중개 수수료를 제시하는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을 중개하고, 이에 따라 보험자간 과열 경쟁이 야기되어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보험 산업의 부실화가 초래되면,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중개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하여 브로커가 아무렇게나 보험을 중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로커는 중개에 대한 법적 책임

을 부여받고 있기는 하나,²⁾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러한 종류의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더욱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율 규제 방식과 같이 손보사 상호간의 자발적 효율 관련 협정 (Inter-Company Agreement)을 유지하여, 브로커들이 부당하게 낮은 효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진다.

2) 크로스 보더의 허용 범위 확대

크로스 보더의 거래 허용 종목이 1997년 1월부터 추가로 확대되어 외국 보험 사업자는 국내에 지점 등 영업장이 없어도 통신 판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 판매를 할 수 있고, 국내 계약자들은 직접 외국 보험 회사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보험사들은 전세계의 모든 보험사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보험 계약자는 보다 많은 보험사들 가운데서 저렴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반면, 국내 보험사들은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크

로스 보더의 확대로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보험(보험 금액이 투자 수익에 따라 변화하는 변액 보험이나 시장 이자율에 연동되는 유니버설보험 등³⁾)들이 도입되어 국내 수요자층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크로스 보더의 확대로 우려되는 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정보가 부족한 국내 보험 계약자가 불량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손해 발생 및 기업들의 고액·우량 물건의 해외 유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 폐지

경제적수요심사제도는 그동안 시장 질서의 분란이나 효율 덩핑 방지 등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또는 가격이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ENT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내국인 및 외국인의 보험사들은 일정 설립 요건만 갖추면, 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른 보험 시장 개방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생보의 경우 80년대 이후 27 개사가 신설되어 추가 진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손보의 경우 현재

2) 브로커 개업시 사업 규모에 따라 개인은 1억~60억 원을, 법인은 3억~60억 원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국내 규정이 마련되었음.

3)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들은 확정 금리를 보장해줌으로써, 만약 시중 금리가 확정 금리보다 낮아질 경우 보험사의 지불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됨. 따라서 이러한 보험들은 보험사의 역마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발된 상품들임.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만 허용되고 있어 ENT 폐지로 인한 어느 정도의 신규 진입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사들은 시장에 경쟁자가 증가하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는 시장에서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4) 재보험 자유화 및 해외요율구득제 폐지

과거에는 국내사 재보험 우선 출재 및 해외 요율 구득의 창구 일원화로 재보험 거래에 제약이 있었으나, 1993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오다가 1997년부터 재보험의 전면 자유화 조치에 따라 원보험사들은 재보험의 해외 거래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수사의 재보험 처리 능력이 향상되며 이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순효과도 있으나, 보험료의 해외 유출 증가와 극심한 요율 경쟁으로 인한 불량 재보험자와 거래하는 역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5) 손해 사정업 및 보험 계리업의 개방

손보의 경우 손해 사정 업무가 주로 외부의 손해 사정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손해 사정업의 개방으로 외국인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선진 손해 사정 기술

의 국내 유입과 시장 경쟁을 통하여 보험사는 효율적인 손해 사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장점도 있는 반면, 규모와 기술 등에서 취약한 국내 손해 사정 업계는 외국 사정 업자에게 잠식당할 수도 있게 된다. 보험 계리업의 경우 현재 계리인이 보험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계리 업무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대외 개방으로 외국의 보험 계리사가 진출하게 되면 상품 개발과 요율 산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국내 보험사의 종속화 우려, 국내 계리인의 외부 이탈, 보험 계리 전문 업무의 확대에 인한 소비자 보호 의식 팽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6) 종합적 영향

앞서 살펴본 주요 보험 시장의 개방화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보험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대외 경쟁력 강화 및 보험 계약자의 편익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보험 시장의 참가자 수 증가로 보험사들은 사업비 절감과 순이익 증대 등 생산성 향상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보험 산업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요인으로는 외국사에 의한 국내 보험 시장의 잠식, 기존 모집체계의 혼란, 국내 보험 물건의 해외 유출 등이 있다.

금융 산업의 환경 변화

금융개혁위원회 출범으로 현재까지 추구해 오던 금융 정책의 개선과 금융 산업 개편⁴⁾ 등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정책의 개선은 금리 자유화와 함께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되 금융 거래자의 보호는 강화시키고, 간접 통화 관리 방식을 정착시켜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 산업의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 기관의 신규 진입 및 대형화·전문화 문제, 금융 기관의 업무 영역 조정 문제, 금융 기관의 소유 구조 개선 문제 등을 해결 과제로 삼고 있다. 금융 기관이 M&A, 증자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게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업무 영역 조정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종합 여신 전문 기관으로 분류하되 필요시 자회사 방식을 통한 진출은 허용되어 있다. 이해 상충 문제가 적거나 고유 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부수 업무는 직접 겸영 또는 상호 진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금융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기관의 소유 구조 문제는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소유에 따

른 경제력 집중 문제와 주인이 없거나 자본이 부실한 금융 기관의 경영 효율성 문제의 딜레마로 인하여 현재까지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구상은 금융개혁위원회 설치와 함께 보다 더 논의를 거쳐 변화의 폭과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산업의 구조 변화

정부 보호의 우산 속에 외형 성장에 치우쳐 왔던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 시장의 개방화 및 보험 가격의 자유화시대에 생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만 하게 되었다. 첫째, 국내외 금융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선진 보험 기법 및 자산 운용 기법을 도입하고 겸업화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연계성을 고려한 자산 및 부채의 종합관리시스템(ALM)의 개발, 언더라이팅 기술의 제고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의 결합인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등을 고려해야만 하게 되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들 자체적으로는 타 금융 기관의 업무를 겸업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금융 기관의 인수나 업무 제휴 방식을 통하여 겸업화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 자율화 및 금융 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면,


4) 금융제도 개혁의 내용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 개편 연구(1993. 12)」와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1993. 5)」에서 발표되었음.

보험 회사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타 금융 업무의 일부를 보험 회사가 취급할 수 있게 허용될 가능성은 있다.

둘째, 보험 상품의 가격 경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 판매 방식과는 다른 통신, 점두, 인터넷 등을 이용한 판매 채널의 다각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판매 방식의 도입은 기존 판매 방식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중간 및 사무 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보험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판매제도가 본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객의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다양하고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품 개발, 요율 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마케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의 협정요율체계에서는 상품 개발과 요율 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가격 자유화로 인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보험사는 고객의 정보에 대한 통계 파일을 구축해야 하며, 인수 물건의 위험도에 걸맞는 요율을 제시할 수 있는 언더라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장 개척을 꾀해야 한다.

더욱이 보험 시장 자체의 개방화뿐만 아니라 쏠금융 시장의 개방화·자유화·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 산업도 專業主義에서 兼業主義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커져,⁵⁾ 보험 산업은 타 금융 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경쟁의 형태는 단순한 상품 또는 금융 서비스에 한하지 않고, 복합적인 상품 및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판매 방식 등으로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고객의 금융 수요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국내 보험 시장의 환경 변화와 기타 국내외의 금융 환경 변화는, 보험사에게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하게끔 요구하여 보험 산업의 구조도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중소형社의 경우 합병이나 증자를 통하여 영업 규모의 확장을 추구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영업을 지양하고 내실 위주의 영업 전략으로 틈새 시장을 겨냥한 전문화된 영업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형사들은 겸업화 추세에 따른 각종 금융 기관과의 경쟁 격화로 인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입각한 대형화를 시도하여 종합금융화시대에 대비할 것이다. 즉,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보험 산업은, 다양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차별화된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욱 기능별·규모별로 세분화될 것이다. 

5) 이러한 금융 기관간 업무 영역 조정에 따른 겸업주의 정책 방향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 부문에서 이미 나타났고, 향후 전개될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시기와 폭에 관해서 보다 더 활발히 논의될 것임.